

2022년 상반기 Refresh 휴직 시행

□ 추진목적

- 장기근속직원 대상 자기계발 및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업무 동기부여

□ 주요내용

- 대상 : 전 직원(상무보/임원/계약직 제외)
- 휴직신청기준(기간/급여)
 - 신청기준 : 재직기간 동안 최대 3회, 6개월 단위로 신청가능(재신청자는 잔여기간 내 신청)
 - 급여 : 월기본급의 80% 지급 (성과급, 제수당 등 미지급)

[1] 최초사용자(22.1.1일 이후)

실 근속년수	신청가능 기간	휴직 중 급여
10년이상	6개월 or 12개월	6개월(유급) → 6개월(무급)
20년이상	6개월 or 12개월 or 18개월	6개월(유급) → 6개월(유급) → 6개월(무급)

* 실 근속년수 기준: 청원휴직기간 제외, 그룹사 전출은 근속기간에 포함

[2] 재신청자(22.1.1일 이전 Refresh휴직 사용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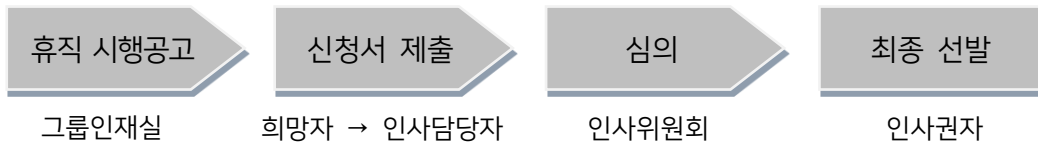
실 근속년수	기 사용기간	잔여 휴직기간/급여
10년이상	6개월(유급)	6개월(무급)
20년이상	6개월(유급)	6개월(유급) → 6개월(무급)
	6개월(유급)+6개월(유급)	6개월(무급)

- 선발규모 : 현원의 1% 수준(연간)

○ 신청자격

- 휴직시행일 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
 - 휴직, 교육파견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
-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(휴직복귀 예정일 기준)
 -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징계처분기록말소 또는 사면 시 신청가능

○ 선발절차



- 휴직 희망자는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부문/광역본부별 인사위원회 후 인사권자(부문장/광역본부장)가 최종 선발 (단, 지원부서는 그룹인재실에서 인사위원회 진행)
- 업무성과, 신청동기, 휴직기간 활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
- 해당부서 인력 현황, 업무 공백 등 경영적 요인 고려

○ 세부 운영기준

- 평가 : 휴직복귀일 기준 평가공시까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미시행 (단, 채우는 G등급 기준)
- 근속 :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
- 복직 : 휴직기간 중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
- 배치 : 원소속 복귀 원칙
- 퇴직 : 휴직 중 퇴직(의원면직/희망퇴직) 신청 가능
- 교육파견 후 의무복무기간인 경우 휴직기간 만큼 의무복무기간 연장
- Refresh휴직 중 이중취업 등 신청 목적 외 활동 금지

□ 추진일정

구분	일정
1. 부서별 신청서 접수	2021.12.09(목) ~ 12.17(금)
2. 인사위원회 심의/의결	2021.12.20(월) ~12.22(수)
3. 선발자 최종확정	2021.12.23(목) ~ 12.24(금)
4. 업무 인수인계	2021.12.27(월) ~ 12.31(금)
5. Refresh휴직 시행(발령)	2022.01.01(토) ~

□ 주요 Q&A

Q1. Refresh휴직 시행일이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?

- [기존] 3.1일, 9.1일 → [변경] 1.1일, 7.1일 ('22.1.1일 시행)

Q2. 과거 Refresh휴직을 사용했던 직원도 재신청 할 수 있나요?

- 네, 가능합니다. 재직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 ('21.11 단체협약)
- 기사용자는 잔여기간 내에서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잔여기간	신청가능기간	근속10년이상	근속20년이상
6개월 미만	없음(소멸)	-	-
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6개월	6개월(무급)	6개월(무급)
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	12개월	-	6개월(유급)+6개월(무급)

Q3. Refresh휴직은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네, 가능합니다. 휴직복직을 하지 않고 연장시행일 30일 이전에 부문/광역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,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.
- 단, 변경기준 적용일 이전 Refresh 휴직으로 '22년 3.1일자/9.1일자 복직예정자는 연장 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
Q4. Refresh휴직 시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유급휴직을 먼저 소진한 후, 무급휴직을 적용하게 됩니다.

<p>예시) 근속 20년 이상자가 6개월 휴직 후, 12개월 연장 신청 할 경우</p> <p>6개월 무급휴직 먼저 사용 후, 12개월 유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6개월(유급) + 6개월(유급) + 6개월(무급)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</p>

Q5. 병가를 사용한 사람도 Refresh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가능합니다. 병가는 근속포함 사항이고, Refresh휴직은 재충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6.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Refresh휴직 승인이 가능한가요?

- 불가능합니다. Refresh휴직은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육아 목적의 휴직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, Refresh휴직은 취지에 벗어납니다.

Q7. (회사)교육파견을 다녀온 직원은 의무 복무일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못하나요?

- 신청가능합니다. 단, Refresh휴직 기간 동안 교육파견 복귀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.

Q8. 전년도과과가 N 또는 U인 경우 미승인 대상인가요?

- 평가결과로 미승인 기준은 없습니다. 단, 종합적 판단 시 인사평가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Q9. 평가기간에 Refresh휴직 중인 경우 어떤 평가등급을 받게 되나요?

- 휴직복귀일 기준 평가공시까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미시행. (처우 G등급)

Q10. Refresh휴직 중 조기복직이 가능한가요?

- 경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여 조기복직 가능합니다.
- 단, 조기복직 시에는 6개월 단위로 6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은 소멸 됩니다.